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서울서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유상민  
전화 02-3270-4392, 팩스 02-3270-4310

## 보도자료

2024. 1. 19.(금)

### 제 목 이태원 핼러원데이 참사사건 관련 수사 결과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(제11조 제1항)
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0조 제2항)

○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(부장검사 김정훈)는 오늘(1. 19.) 이태원 핼러원데이 참사사건 관련,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습니다.

#### 【주요 처분 내용】

- **[기소]** ① 당시 서울경찰청장 A, 112상황관리관 B(총경), 112상황실 간부 C(경정)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, ②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D(경무관)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, ③ 용산경찰서장 E를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
- **[불기소]** 당시 용산소방서장 F 및 소방서 팀장 G,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H 등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

○ 검찰은 오늘 기소한 5명을 포함, 현재까지 기소된 18명 등 총 21명(별지 표 참조, 2명은 추가기소)에 대하여,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 I

## 주요 경과

- 2022. 10. 29. 22:16경 참사사건 발생
- 2022. 12. 30.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 증거인멸교사 등 (3명 기소)
  -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(이하 '정보부장') 등 2명 구속 기소 및 용산경찰서 정보관 1명 불구속 기소
- 2023. 1. 18. 용산경찰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(5명 기소)
  - 용산경찰서장 등 2명 구속 기소 및 용산경찰서 경찰관 3명 불구속 기소
- 2023. 1. 20. 용산구청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(4명 기소)
  - 용산구청장 등 2명 구속 기소 및 용산구청 공무원 2명 불구속 기소
- 2023. 1. 27. 사고 현장 인근 건물 불법 증개축 등 (5명 기소)
  - 불법 건축주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/ 1심 유죄판결, 항소심 진행 중
- 2023. 3. 3. 용산보건소장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(1명 기소)
  - 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

검찰은 2023. 1. ~ 12. ▲경찰청·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, ▲서울경찰청장, 용산소방서장 등 피의자들 조사, ▲경찰 및 소방의 각 기능별 담당자 조사, ▲사고 원인 관련 자체 전문가 (공학·법학·응급구조·재난안전 분야 전문수사자문위원 5명 위촉) 자문 확인 등 보완수사

- 2024. 1. 4. 검찰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
  -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,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침으로써 적정 의견을 도출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
- 2024. 1. 15.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결
  - A에 대하여는 기소 권고(기소의견 9명, 불기소 의견 6명)
  - F에 대하여는 불기소 권고(기소의견 1명, 불기소 의견 14명)
- 2024. 1. 19. 서울경찰청장 A 등 5명 불구속 기소

## II

## 공소사실 요지

### 서울경찰청장 A, 112상황관리관 B, 112상황실 간부 C

- A는 2022. 10. 29.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,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·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
- B는 2022. 10. 29. 당시 112상황실 관리·감독 등 당직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이고, C는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팀장으로서,
  - 핼러윈데이 다중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,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하여 대응하지 않았고, 서울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
- 결국, A, B, C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,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망, 312명 상해에 이르게 함 [업무상과실치사상]

###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D (추가기소)

- D는 2022. 11. 2.~4.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여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 파일(1개)을 삭제하게 함 [증거인멸교사,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]
- ※ D는 '22. 11. 2.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(4개)를 삭제 지시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

### 용산경찰서장 E (추가기소)

- E는 2023. 1. 4. 국회에 설치된 「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」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,
  - ① 사실은 참사 당일 23:01경 이전에 이태원 사고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23:01경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허위 증언
  - ② 사실은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지원 요청을 지시하였고, 그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허위 증언 [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]

## Ⅲ 불기소 처분 요지

### 용산소방서장 F, 용산소방서 팀장 G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

- 소방 구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상의 구조 결과를 낳지는 못하였으나, 2022. 10. 29. 22:24경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여 약 7분만인 22:31경 구조에 착수한 점,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,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,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
###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

- H에게 적정한 정보활동을 하여 관내에서 범죄·사고 등의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일반적 주의의무는 있으나, 정보과장이 헬러원데이 인파운집 대응 부서로 지정되거나,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

[별지]

□ 금일(1.19.) 기소 사건 (5명)

	피고인[사건 발생 당시 신분(계급)]	공소사실 요지
1	A [서울경찰청장(치안정감)]	• 헬러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'22. 10. 29. 158명 사망 등[업무상과실치사상]
2	B [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(총경)]	•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정착근무,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'22. 10. 29. 158명 사망 등[업무상과실치사상]
3	C [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(총경)]	•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으로 '22. 10. 29. 158명 사망 등[업무상과실치사상]
4	D [서울경찰청 정보부장(경무관)]	• '22. 11. 2~4.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헬러윈 대비 자료삭제 지시[증거인멸교사,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]
5	E [용산경찰서장(총경)]	• '23. 1. 4.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인지 시점 및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[국회에서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

□ 기소되어 재판 중 사건 (18명)

피고인[사건 발생 당시 신분(계급)]		공소사실 요지
1	D [서울경찰청 정보부장(경무관)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2. 11. 2. 용산경찰서 정보관 ㉠ 등으로 하여금 헬러윈 대응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[증거인멸교사, 공용전자기록 등손상교사]</li> </ul>
2	H [용산경찰서 정보과장(경정)]	
3	㉠ [용산경찰서 정보관(경위)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2. 11. 2. D, H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 중 1건 삭제[증거인멸, 공용전자기록등손상]</li> </ul>
4	E [용산경찰서장(총경)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E, ㉡, ㉢] '22. 10. 29. 법령 등에 정한 주의의무 불이행 등으로 158명 사망 등 [업무상과실치사상]</li> <li>• [E, ㉣, ㉤] '22. 10. 29.~30. E의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빠르게 허위 기재한 조치 보고서를 작성 및 송부[허위공문서작성·행사]</li> </ul>
5	㉡ [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(경정)]	
6	㉢ [용산경찰서 112상황3팀장(경감)]	
7	㉣ [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무(경위)]	
8	㉤ [용산경찰서 여청과장(경정)]	
9	㉥ [용산구청장]	
10	㉦ [용산구청 부구청장]	
11	㉧ [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]	
12	㉨ [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전원] '22. 10. 29. 법령 등에 정한 주의의무 불이행 등으로 158명 사망 등[업무상과실치사상]</li> <li>• [㉥] '22. 10. 30. ㉥의 현장 도착 시간 등 허위 기재 문서 작성[허위공문서작성·행사]</li> <li>• [㉨] '22. 10. 29.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귀가 후 무대응[직무유기]</li> </ul>
13	㉩ [甲 호텔 대표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9. 11. 5. 甲 호텔 본관 2층 후면을 임차한 乙 음식점 앞에서, 신고 없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상가를 증축하는 등 [건축법위반, 도로법위반]</li> <li>• '18. 2. 3. 甲 호텔 본관 서측에서, 신고 없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가벽을 증축하는 등 [건축법위반, 도로법위반]</li> </ul>
14	㉪ [甲 호텔 운영 법인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 ㉩의 범행 관련 양벌규정</li> </ul>
15	㉫ [乙 음식점 운영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 ㉩의 '19. 11. 5.자 범행 공범</li> </ul>
16	㉬ [丙 주점 운영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2. 10. 28. 甲 호텔 별관 1층을 임차한 丙 주점 앞에서 신고 없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 [건축법위반, 도로법위반]</li> </ul>
17	㉭ [丙 주점 운영 법인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 ㉬의 범행 관련 양벌규정</li> </ul>
18	㉮ [용산보건소장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2. 10. 30.~11. 14. 5회에 걸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(전자기록) 작성 및 비치 [공전자기록등위작·행사]</li> </ul>